

최종보고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화와 발전방안

2018.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提 出 文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화와 발전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03.

책임연구자 : 이 기 범 (숙명여대 교수)

연구자 : 김 연 철 (인제대 교수)

김 제 선 (희망제작소 소장)

송 기 춘 (전북대 교수)

여 혜 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

윤 철 기 (서울교대 교수)

이 정 철 (숭실대 교수)

정 용 민 (월계고교 교사)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 보고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화와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수행된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CONTENTS

I. 민주평통의 기능 발전 방안 .....	1
1. 헌법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 평가 .....	3
2. 자문·건의 기능의 정비 .....	5
3. 실천의 통일거버넌스 구축 .....	9
II. 민주평통의 조직 발전 방안 .....	51
1. 자문회의 .....	17
2. 사무처 .....	21
III. 민주평통의 해외 통일활동 활성화 방안 .....	52
1. 해외 조직 현황과 특징 .....	27
2. 해외 통일활동 활성화 방안 .....	31
IV. 관련 법규 개정 방안 .....	3
[부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	34
1. 기 능 .....	45
2. 연 혁 .....	45
3. 소관법령 .....	46
4. 조직체계 .....	46
5. 자문위원 개요 .....	51
6.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기능 및 현황 .....	54





## I. 민주평통의 기능 발전 방안





# I. 민주평통의 기능 발전 방안



## 1 헌법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 평가

### 1) 민주평통의 현 위상과 문제인식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헌법기구로 설립된 이래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과 법령에 따라 평화통일 관련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통일공감대 형성 등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았지만, 관변 조직, 혹은 정치 조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
- 헌법상의 핵심 기능인 대통령 자문·건의의 실효성 약화
  -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 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언론 등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받고 소통하고 있는 실정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며,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국민의 의사를 중개하는 기관
- 헌법기관이지만 설치가 강제되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직무범위, 조직이 결정되는 임의기관
- 대통령 자문체로서는 규모가 방대하고 다른 기관과 기능상의 중복이 강하며,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체로서는 법적 뒷받침이 취약



- 또한 남성과 장·노년 중심의 구성, 정치인과 정당의 압도적인 추천 권한 행사로 인한 자문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평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헌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통일 관련 실천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헌법적 근거가 부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건의에 한정하지 않고 민주평통법에 명시된 기능에 따라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논란 및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태생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실효성의 관점에서 민주평통의 존재 근거는 취약한 점들이 있지만,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상의 목표를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저조하고 남남갈등과 세대간 인식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은 민주평통이 환골탈태하여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 제기

## 2) 변화와 발전 방안

- 개선 방안의 핵심은 ‘평화적 통일 실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냐는 진단에서 출발
  - 그 장애물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 그리고 세대간 인식 격차 및 남남갈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평통의 개혁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임.
- 혁신의 중점은 참여형 통일인식 제고와 통일문화 확산
  - 국민(사람)과 재외동포,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 등 소외계층의 ‘참여형 통일인식 제고와 통일 문화 확산’을 혁신의 중점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 자문체와 실천체의 선순환적 발전

- 자문체로서의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실천체로서의 역할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체성 정립이 요구됨.
- 기존 자문과 건의는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국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와 그 원인과 배경,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정책제안 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화를 추구해야함.

## 2 자문·건의 기능의 정비

## 1) 현행 자문·건의 기능 및 운영 평가

-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건의가 이루어지고, 분기별 보고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2만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구조적 한계
  - 실제로 여론조사 외에 정기회의, 직능별 정책회의, 지역회의 등 다수의 자문위원이 참여·논의한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함.
  - 일반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도 의견수렴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거리가 있는 건의안의 경우 BH의 관심 저하
  - 지난 정부의 경우 △남북대화 추진, △남북경협 활성화, △인도적 지원 확대,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관계 발전 관련 건의안에 대한 BH의 부정적 인식이 표출된 바 있음.
- 정책건의 반영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홍보 및 피드백 부족
  - 정책건의안의 실제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국회, 언론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정책건의 현황>

구분	내용
정책제언	의장 참석 행사시(전체회의, 의장집견) 대표 자문위원이 특정 주제에 대해 제언 형식으로 발언(통일대화)
정기건의	분과위원회 논의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건의 (분기별, 의장 재가)
수시건의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건의(정책포럼, BH 보고)

<통일여론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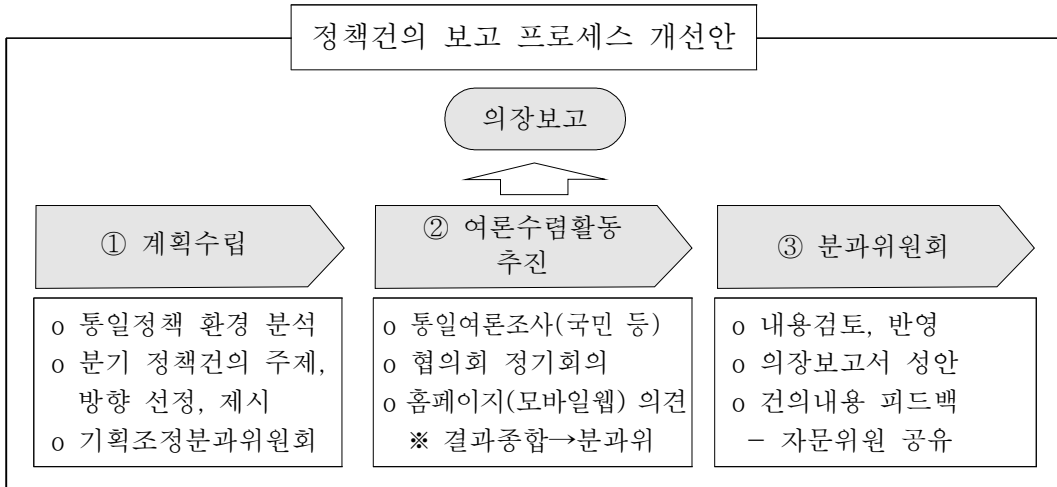
구분	대상	조사방법	비고
국민통일여론조사	일반국민 1,000명	전화, 외주용역	분기별, 정책건의 연계
전문가 모니터링	전문가 150명	이메일/모바일, 외주용역	"
자문위원 온라인 조사	자문위원 19,710명	자체 시스템	"

2) 자문·건의 기능의 발전 방안

■ 온라인 플랫폼 및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정책건의 추진

-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2만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 (특히 모바일웹)를 통한 정책건의 의견 수렴
-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의지 충족 및 다양한 정책건의안 도출 등 18기 민주평통의 변화·발전을 촉진

■ 정책건의의 프로세스 개선안



- 정책건의의 보고 일정(3개월)에 맞춰 여론수렴 사업을 집중도 있게 추진하고 기한 내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건의에 반영
  - 통일여론조사, 정기회의, 평화통일포럼 등을 통해 종합된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차별성 있는 건의를 추진함(bottom-up 효과).
- 정책건의의 주제와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여론수렴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시행
  - 통일정책자문국과 위원활동지원국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함.
- 정책건의의 추진일정에 따라 개별 여론수렴활동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여론수렴활동의 목표를 현장의 통일여론 수렴에 두고 추진함.
  - 유의미한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설문지, 의견서 등을 수집하고, 종합정리 후 해당되는 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회부함.
  - 패널식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표본 집단의 통일의식의 변화를 관찰·분석할 필요가 있음(500명의 표본을 선정하고 연 2~4회 가량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강구 등).
  - 자문위원 대상 여론조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장보고서 성안

- 열린 분과위원회 : 협의회장, 포럼연구위원장,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분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의장 보고서 성안 :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주관, 여론수렴 결과 및 분과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성안함.

■ 정책건의의 대면보고 추진

○ 지역 현장의 통일여론이 충실히 반영된 정책건의의 추진 및 의장과의 소통 기회 확대

- 연 1회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정책건의의 보고회’로 추진함(연말).

○ 의장 대면보고 시 수석부의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이 배석하여 보고

■ 의장과의 소통확대를 위한 ‘자문’ 기능 활성화

○ 상향식 정책건의의 뿐만 아니라 의장이 수시로 민주평통에 ‘자문’을 구하고, 민주평통은 조직역량을 발휘하여 정책대안을 자문·건의

- 의장과 자문위원 간의 적극적 소통의지 시현,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함.

■ 정책건의의안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정책건의의 보고 내용을 지역협의회에 회신함으로써 자문위원의 정책건의의에 대한 자긍심 제고

■ 효율적 자문건의의 기능 수행을 위해 통일여론조사 보완

○ 기존 통일여론조사에 청년층, 전문가(확대),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여론에 기반한 자문건의의 추진

### 3 실천의 통일거버넌스 구축

#### 1) 현행 지역통일활동 운영방식 평가

■ 민주평통은 각 추천기관별 추천에 의해 구성되어 통일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합 이지만, 자문위원 구성의 불균형과 위촉절차의 폐쇄성, 존재감 부족 등으로 인해 통일거버넌스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임.

■ 민주평통 기능·역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부족

○ 민주평통의 주요 설치목적은 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건의

- 일반 국민은 민주평통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해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있음.
- 2만여 자문위원이라는 규모로 봤을 때는 민주평통의 통일공감대 형성 활동이 중요하지만, 본질적 기능은 자문·건의의 역할임.
- 또한, 통일공감대 형성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민 참여 사업이 부족한 실정임.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활성화 미흡

- 정기회의는 협의회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자문위원과 일반국민의 통일에 관한 의견을 종합,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 ※ 228개 국내협의회별로 분기별(연 4회) 개최
- 실질적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이에 기반한 자문·건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함.
- 자문위원들의 의무 사항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임무부여가 필요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존재감의 부족

- 자문위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형성
  - 위축을 희망하던 일부 자문위원들이 위축 후에는 참여와 활동이 미진하여 협의회 통일활동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함.
  - 자문·건의와 통일공감대 형성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이 요구됨.
-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보다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홍보하는 관변단체로의 이미지 부각
  - 주요 통일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동원형 강연, 결의대회 등의 활동으로 정부정책의 홍보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함.

2) 변화와 발전 방안

■ 통일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단위 활동의 활성화 유도

- 국민대표성을 확보하여 민-관을 아우르는 ‘협업’ 단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 구성의 대대적인 개혁과 소외된 세대와 계층의 참여 통로 확보 필요
- 광역단위로는 지역회의 차원에서 지역의 대학내 연구소(원),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여론주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참여 활동 추진
  - 낮은 단계부터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실시: 예산과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시민단체들과 ‘평화통일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협업 사업으로 진행함.
  - 해당 지자체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지역 내 언론사와의 공동캠페인, 각종 경연대회, 우수 사례 발표 등을 추진함.
- 지역단위로는 지역협의회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민주평통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부여

-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학, 지역 언론사 등과의 주기적 협력사업 모델을 꾸준히 개발·추진함.
- 협의회 주최 일반 국민대상 강연회 개최시에 지역시민사회, 종교단체, 대학교 등과의 연계로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 홍보 등을 협업사업으로 진행함.
- 지역 축제, 기념일에 통일관련 홍보관 설치, 세미나 개최, 광고 게재,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

○ 민주평통의 최대 강점인 정부-민간의 ‘액션거버넌스’의 활발한 작동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협업 활동 강화

- 민주평통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업을 통해 통일사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통일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 자문위원의 역할과 동기 부여 및 책임성 강화

○ 통일정책 자문·건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자문위원 대상 여론조사 확대, 통일관련 포럼, 학회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자문위원의 의무 강화: 회의 참석, 여론조사 참여, 온라인 강연 수강 등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여 이 비율을 넘기지 못하면 차기 자문위원 위촉시 배제를 명문화함.

○ 온라인 자문건의 활성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정책건의 대국민 평가제’ 도입 검토

#### ■ 청년층 및 여성층 통일운동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확대

○ 사무처 내에 비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가칭)‘청년활동위원회’를 200명 내외 규모로 신설하고 유급 활동가를 선발, 패널식 여론조사 활동 수행

- (가칭)청년활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사무처에서 제시하는 이슈와 패널들이 제안한 토론주제에 대해 국민여론조사와 보고서 작성, 발표기회를 부여함.



- 이는 활동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여론수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자문위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음.
  - 활동실적을 관리, 추후 자문위원으로 우선 위촉기회를 제공함.
  -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통일분야 청년층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기대할 수 있음.
    - ※ 1993년 아일랜드가 평화프로세스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옵살위원회(Opsahl Commission)를 결성하고 이 위원회가 청년층들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과 대화하게 하고 여론을 수렴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활동력 있는 여성 자문위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여성층의 통일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도 여성위원회 산하에 비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가칭) ‘여성평화통일 실천단’을 조직·운영
- 우수 단원에 대해 차기 자문위원 위촉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
  - 임기 만료 여성위원도 ‘여성평화통일실천단’ 활동을 통해 명예 자문위원 형태의 예우를 마련함.
- 지역협의회를 활용하여 통일국민협약(가칭 ‘통일을 위한 약속’)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및 확산
- 지역협의회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론화하여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통일공감대 확산
- 지역협의회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통일국민협약’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사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 법·제도 개선 사항

#### ■ 교류협력 및 탈북민 정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강화

##### ○ 교류협력 참여 기능 강화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이 공존하는 민주평통의 강점을 활용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확대함.
- 국내외 민주평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류협력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음.

##### ○ 지역사회 탈북민 정착지원 기능 수행

- 지역협회의 자체역량으로 탈북민 정착지원의 중추적 역할 수행이 가능함.  
※ 지역협회에서는 자문위원·탈북민 간의 멘토-멘티 등을 운영 중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한 활동근거 및 예산 확보

##### ○ 정기회의를 법정회의화하여 수당·여비 등 지급근거 마련

- 출범회의(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법정회의로 수당·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음.
- 전 자문위원이 참석대상인 정기회의를 법정회의화하여 자문위원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고 위원으로서의 영예성을 제고함.

##### ○ ‘청년활동위원회’ 및 ‘여성평화통일실천단’ 활동 예산 확보

- 자문회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신설 조직의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통일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함.





## II. 민주평통의 조직 발전 방안





## II. 민주평통의 조직 발전 방안



### 1 자문회의

#### 1) 현행 자문회의 조직·구성 문제점 및 평가

-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규모는 방대하나,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가 모호하며, 전문성이 부족
  - 외부 전문가의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자문건의 보고서의 질적 차이 발생
  
-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부재
  -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소신 있는 정책건의의 한계
    -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건의로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 성별·연령대별 위촉 불균형으로 자문회의 본질적 기능 수행 어려움
  - 남성 위주, 50대 이상 비중 과다
    - 현재 선정 방식으로는 성별·세대별·직능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사의 위촉이 어려움.
      - ※ 18기 자문위원 중 45세 이상 비율 79.6%, 남성 비율 70.4%
  -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등 통일운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대상 ‘참여형 통일 인식 제고와 통일문화 확산’ 미흡
    -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탈북민, 사회적 약자와의 교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층을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영입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저조와 소극적 활동으로 불만여론 제기

○ 지방의회 의원의 손쉬운 민주평통 진입과 활동력의 약화

-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직으로 본인의 동의에 의해 위촉되고 있으나 활동 동기 부여가 약하고, 활동 불성실에 대하여 차기 위원 위촉을 배제하는 등 별도의 제재가 없는 실정임.
- 차기 위촉시에 지난 기수의 활동실적을 반영하는 등 엄격한 위촉 기준이 필요함.  
※ 18기 국내 자문위원 중 지방의원 18.5%

■ 자문위원 추천의 투명성 부족과 형식적 추천

○ 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 일부 추천권자는 통일활동의 책임자 대신 정치적 기여 인사 위주로 추천

- 추천권자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위주로 위촉하여 국민의 통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의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 18기 국내 자문위원(지방의회의원 제외) 중 자치단체장 추천 30.6%, 정당·국회의원 추천인사 15.3%

○ 주무관청의 장(정부부처의 장)의 형식적·관행적 추천

- 주무관청의 장은 정부부처에 등록된 직능 단체에서 통일활동을 주도할 주요 인사를 추천해야 하나, 사실상 관행적 추천에 그쳐 추천인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함.
- 추천된 인사는 자문회의의 활동력이 약하며, 지역 내에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함.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무관청의 장 추천 비율이 낮아지게 됨.  
※ 18기 국내 자문위원(지방의회의원 제외) 중 주무관청의 장 추천 비율 4%

○ 추천권자의 추천에만 의한 폐쇄적 위촉 경로로 일반 국민의 참여 한계

- 자문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추천기관(추천권자) 추천을 받지 못하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어려움.

- 상시 후보자 추천체제가 아니며, 정보부족 등으로 추천기간 내 신청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함.
-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기추천제의 비율이 낮으며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검증이 어려움.
  - ※ 18기 국내 자문위원(지방의회의원 제외) 중 자기추천제 위촉 비율 2.9%

○ 참여율이 낮은 자문위원으로 인해 협의회 활동력 약화

- 참여율과 활동의지가 저조한 일부 자문위원들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문위원의 사기가 저하되며 지역 통일활동 활성화의 방해요인으로도 작용함.

■ 재외동포 중 유일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된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위촉 경쟁 과열

○ 일부지역은 재외동포사회의 갈등까지 초래하며 재외공관장(해외자문위원 추천권자)의 후보자 추천시 책임성 강화가 필요

## 2) 변화와 발전 방안

■ 형식과 내실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문위원 구성 혁신

○ 기존 법적 추천권자 추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추천제도 도입

- 추천권자와의 친분, 이해관계로 추천된 인사의 비중이 높아 추천권자나 추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력인사와의 연결고리가 없는 유능한 통일인사의 참여 통로 확보가 필요함.

○ 지금까지 되풀이된 추천기관 추천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새로운 해법 마련 필요

- 민주평통의 '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추천권자의 추천권은 보장하되 지역 내 인사를 발굴, 육성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
- 추천기관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추천기관별 자문위원 추천위원회 의무화 등



■ 통일인재 발굴에 주안점을 둔 자문위원 구성

○ 여성·청년층 위촉 확대로 자문회의의 대표성 강화

- 여성성에 바탕한 섬세한 통일운동 추진과 청년층의 활력을 통일활동에 접목 시킴.
- 참여형 통일공감대 확산 활동을 위한 방향으로 자문회의의 구성이 되어야 함.
- 상임위원 등 간부 자문위원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발 과정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회적 약자·탈북민·다문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위촉 확대

-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통일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위촉을 확대함.

○ 성인 대상 자문위원 예비교육과정 운영

- 협의회 활동 참여, 참관 등 예비교육과정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위촉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과 열정을 담보할 차세대 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자문위원 인재 영입의 주요 창구로 활용함.

■ 대행기관(지방자치단체)과의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자문회의 운영

○ 무기계약직 근로자 1인이 근무하는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행정업무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행기관의 적극적 인력 지원 필요

- 사무처 정원으로는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공무원 근무는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사무처 인력 증원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평통의 대행기관으로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1차적으로 지역회의와 활동이 활발하고 자문위원 수가 많은 협의회에 우선적으로 공무원 파견이 필요함.

■ 활동력 있는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모색

○ 자문위원 활동실적에 따른 차기 위촉 제한 등 명문화

- 법정회의·정기회의 등 참석률, 여론조사 참여율, 정책건의 제출실적,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참여 등의 기준을 정해 일정 기준 이하의 자문위원에 대해 차기 위촉시 제한을 둬.
- 위촉 후 6개월간의 실적으로 불성실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함.
- 지방의회의원 역시 활동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차기 위촉 기회를 배제함.

○ ‘국민참여 공모제’ 도입

-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성 강화와 통일 의지가 높은 인사의 참여 통로를 제공함.
- 국민참여 공모제를 통해 청년·여성·다문화·탈북민 등 위촉 스펙트럼을 넓힌 열린 추천의 통로로 활용함.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를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

- 기존 신원조사가 과도한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연임 후보자에 대한 신원 조사의 어려움 등 위원 적격 심사에 어려움이 많아 민주평통법 시행령에 근거 조항 추가 필요

2 사무처

1) 문제점 및 평가

- 사무처 기능이 직제상 자문·건의, 위원활동 지원 등 소극적 기능에 머물러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주평통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 자문위원과 국민은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므로 제기한 안건 및 의견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성패를 좌우하나, 기본적인 인력 부족으로 이를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큼.

- 자문회의 창설 이후 자문위원 수, 지역조직 확대 및 관련 사업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 조직은 큰 변화가 없음.
-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힘든 실정임.

<민주평통 자문위원·사무처 정원·예산 변동현황>

연도	자문위원수(해외)	사무처 정원(명)	예산(백만원)
1981	8,919(385)	70	2,897
1989	10,593(984)	84	5,552
1992	10,918(992)	108	7,428
1998	13,340(2,211)	65	7,891
2013	19,937(3,275)	70	25,035
2018	19,710(3,630)	74	29,978

-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통일·외교·안보기구에 참여하는 정식 통로 부재
- 부족한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로 부서별 기획과 집행을 복합적으로 진행, 홍보·기획·사업총괄 등의 인력 보완 필요

## 2) 사무처 조직 발전 방안

- 민주평통 기능과 연계한 사무처 기능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바탕한 인력보완 및 조직구축 필요
- 현재 각 부서별 인력이 과장 포함 5~6명으로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조직·인력 보강 분야

### ○ 정책건의

- 다각적인 여론수렴 및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풀뿌리 정책건의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자문건의 전담 인력을 확충함.

### ○ 국내외 지역통일활동

- 새로운 통일환경에 부응하고 세대별, 지역별 등 수요자 맞춤형 통일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 자문위원의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지역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함.
- 지역 및 직능, 재외동포사회의 통일담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 수행 지원이 필요함.
-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해외 자문위원 및 조직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조직 및 인력 확대·보강이 필요함.

### ○ 자문위원 역량 강화

-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문위원 연수, 정책회의 등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함.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자문위원 역량 강화가 정책건의와 통일활동 품질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구축함.
- 증가하는 연수 수요를 고려할 때 연수인력을 보강하고 통일교육 연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연수의 성과를 높이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임.  
※ 2017년 자문위원 연수 44회, 국내 자문위원 16,000여명 대상 실시

### ○ 홍보 기획·정보화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정보보안 포함) 및 온라인 통일활동 추진을 위한 정보화 인력 보강이 필요함.
-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에 대응하고, 변화에 맞는 홍보기법을 도입·운영하기 위한 홍보인력 보강이 필요함.

### 3) 자문회의와 BH 등과의 연결고리 강화

#### ○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배석

- 사무처장은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통일·외교·국방 정책에 관련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자문회의 활동을 추진함.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인사혁신처, 「2017 국가주요직위명부록」)

#### ※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BH 통일비서관실 파견 등 소통체제 구축

- 사무처 공무원의 통일비서관실 파견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실무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함.



### Ⅲ. 민주평통의 해외 통일활동 활성화 방안





### Ⅲ. 민주평통의 해외 통일활동 활성화 방안



#### 1 해외 조직 현황과 특징

##### 1) 인적 구성

- 재외동포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서 해당지역 공관장의 추천 등을 통해 대통령이 위촉
  - 사무처장 제청 제도를 활용하여 재외공관장 추천을 일부 보완함.
- 해외 자문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
  - 해외자문위원 수가 대폭 증가했으며(1기: 385명 → 18기: 3,630명), 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됨.(1기: 4.3% → 18기: 18.5%)
-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위촉
  - 제18기 해외 자문위원은 3,630명이며, 122개국에 자문위원이 분포하고 있음.(163개 공관에서 추천)
  - 미위촉 국가는 상주 재외동포가 100명 미만임.(71개국, 15개 공관)
-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집중
  - ※ 18기 해외 자문위원 중 미국 1,400명, 중국 348명, 일본 430명, 러시아 56명 등 총 2,234명(61.5%)
- 인적 순환과 여성,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 매 기별 신규위원 비율이 50%를 상회하며(16기: 52.2%, 17기: 54.1%, 18기: 53.6%), 여성(30% 목표), 청년(45세 이하, 20% 목표)의 비율이 목표에 근접함.



## 2) 조직 체계

○ 해외 조직은 5개 지역회의, 43개 협의회, 33개 지회 등 총 81개 조직으로 구성

- 지역회의는 대륙별·국가별, 협의회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지역부의장의 책임 하에 운영됨.
- 협의회는 재외동포 수, 자문위원 활동거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협의회장 책임하에 운영됨.
- 지회는 협의회 내에 국가 혹은 도시별 자문위원 수 등을 고려하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치됨.

<해외조직 현황>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자문위원수	해당 국가 (지역)	재외동포 (재외국민 포함)
		지 회			
5개	43개	33개	3,630명		7,430,688명
일 본	4개	-	430명	일 본	818,626명
중 국	5개	2개	348명	중 국	2,548,030명
아세안	7개	12개	640명	남아시아 태 평 양	557,791명
미 주	20개	9개	1,752명	미 국	2,492,252명
				캐 나 다	240,942명
				중 남 미	106,794명
유 럽	7개	10개	460명	유 럽	630,693명
				아프리카	10,853명
				중 동	24,707명

※ 자문위원: 2017년 9월 1일(제18기) 기준  
재외동포: 2017 재외동포 현황(외교부) 기준

### 3) 기능 및 활동

#### ■ 기능

- 해외조직은 해외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통일여론수렴,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통일기반 조성 등을 위한 활동 추진

#### <해외조직 주요 기능(해외협의회)>

- 평화통일에 대한 동포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 통일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사업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사업
- 재외동포 화합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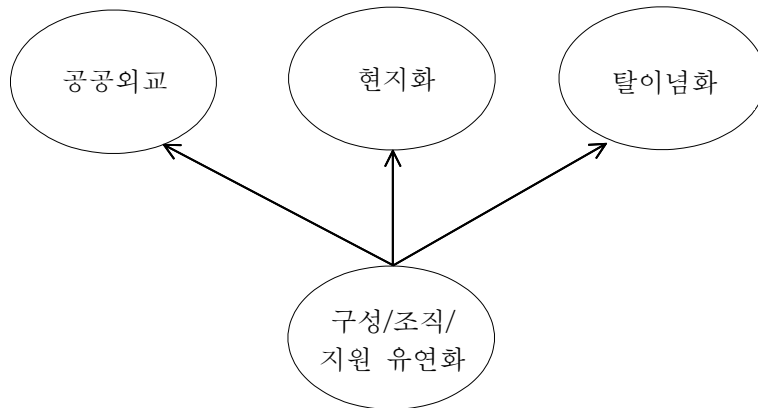
#### ■ 주요활동

- 법정회의(해외 출범회의, 지역회의), 정기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한 여론수렴 및 통일 공감대 형성 활동
  - 출범회의는 임기 개시년도(2년에 1회)에 협의회별로, 지역회의는 임기 2년차에 국내에서 전 해외위원을 대상으로 2-3회로 나누어 개최함.
  - 정기회의는 통일여론수렴을 위해 협의회, 지회단위에서 개최함.
-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우호여론 조성을 위해 국내외 현지 학자, 정·관계, 언론계 인사 등을 초청, 해외평화통일포럼 개최
  - 6자회담 참여국과 EU, 호주, 베트남 등 관심국 중심으로 개최되며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 공감대 형성, 여론수렴 등을 위해 해외 대북정책강연회 개최
  - 협의회 단위, 지회 단위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현지실정에 맞게 추진함.

- 동포사회 차세대 및 여성 리더 육성,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여성 대상 컨퍼런스 개최
  - 해외 청년·여성위원 간 소통·교류 확대를 통한 통일공감대를 확산함.
  - 언어소통이 자유롭고, 주류사회와 접촉이 활발한 청년위원, 생활 밀착형 활동을 하는 여성위원들에게 통일·공공외교 역할을 부여함.
  - 국내위원과 연계를 위해 국내 청년·여성을 초청하여 개최함.
-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통일에 대한 지지 확보
  - 거주국 정부, 의회(중앙 및 지방의회), 국제기구, 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 대상,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한반도 문제 주요 이슈 설명을 통한 지지를 확보함.
- 각 국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통일활동의 개발·추진으로 동포사회의 통일문화 형성 및 통일의지 고취
  - 통일문화 활동을 통한 통일공감대 형성 및 동포사회 화합을 도모함.
  - △통일문화·체육행사, △통일강연회·간담회, △평화공감 백일장, △탈북민 대상활동, △지역 행사와 연계한 통일 홍보활동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함.

## 2 해외 통일활동 활성화 방안

### 1) 해외조직 활성화의 방향



- 공공외교 매개: 통일·공공외교 활동 기반과 역량 확보
  -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거주국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중요시되고 있음.
  - 현지에서 생업 및 사회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대표급 인사가 참여하는 민주평통 해외조직은 현지 국민 및 오피니언 리더 등과 밀착형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 현지화: 현지 요구에 맞는 활동 추진 필요
  - 재외동포 사회는 각 국가·지역마다 역사와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평통 해외조직의 활동환경, 관심이슈, 언어문제 등 지역에 따라 상이함.
  - 민주평통 해외조직이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통한 활성화를 고려해야 함.
- 구성·조직·지원체계의 유연화: 재외동포의 대표성 확장에 기여

- 재외동포수가 750만에 달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진출 확대, 해외 취업 확대, 유학생 증가 등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범민족적 과제인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여론을 수렴·형성하는 플랫폼(Platform)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이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사무처 조직을 강화해야함.

○ 탈이념화: 남북협력시대를 반영하는 정책 지향성 강화

-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해외 조직들 간 이념 논쟁에 거리를 둘 수 있는 화해 정책을 강화함.
- 향후 중국 조선족 동포나 일본 조총련계 등 친북 성향이 있다고 간주되어온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사업 확장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 구성 및 조직 유연화 방향

### ■ 인적 구성

○ 해외 자문위원 규모는 3,500명 이내에서 위축

- 성과적 기능수행, 대표성, 임기(2년) 등을 고려하여 3,500명을 넘지 않도록 위축하며 단순 신규 위원이 아니라 최초 추천자 비율 증대를 추진함.

○ 재외동포 참여제한 해제 노력 및 연계 강화

- 러시아 고려인(17만명), 중국 조선족(220만), 입양아 출신 등을 포함함.

○ 능동적·선제적·상시적 후보자 발굴, 추천 통로의 다변화로 공관장 추천에서 나타난 한계 보완

- 인선시 활동력 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구성을 엄격화함.
- 재외공관에서 소관업무로 하되 해당 동포사회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로 추천 위원회를 구성함.

- 재외동포 이외에도 장기 체류 중인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그리고 거주국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공외교 역량 확대
  - 유학생, 상사주재원, 거주국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유학생, 상사주재원, 거주국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위촉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법령정비 이전이라도 특별자문위원, 명예자문위원 등의 방식으로 위촉함.

#### ■ 지원 체계

- 해외조직 운영비·사업비 지원 현실화
  - 해외조직 운영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문위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
  - 해외 행사에 필요한 강사 등을 수시로 실비 파견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함.
- 해외 자문위원 및 조직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조직 및 인력 확대·보강(해외지역과)
  - 소속 국가, 동포사회 역사, 활동환경, 관심 이슈, 언어문제 등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인력 보강 및 전문성을 강화함.
  - 해외조직의 행정전담 인력이 없고, 지역별 물가, 시차, 언어, 행정처리 관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소통 체계 강화

-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과의 쌍방향 소통 시스템 강화
  - 민주평통 홈페이지를 통해 통일 관련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 체계를 마련함.
  - 국내 각종 단체와 해외 지역의 자매 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함.

■ 공공외교 기능 활성화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현지 시민사회와 정부의 지지 확보를 위한 활동유형 개발·확산·공유
  - 현지 국가의 유권자, 납세자 입장인 재외동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 의회(중앙,지방), 정부, 언론 등에 대한 능동적 활동을 추진함.
  - 중점 타겟(한반도 문제 전문가·해외 주류 인사 등 유력인사)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활동을 추진함.
  - 현지 의회를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담당함.
- 통일관련(정치) 유일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조직인 민주평통 해외조직의 특징과 장점을 발휘하여 단체간 네트워킹 강화
  - 상사 주재원, 유학생, 공관원, 해외 체류 전문가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교류재단(KF), 외교공관, 재외동포재단(OKF) 등과 공동 사업을 강화함.
  - 협의회(지회)당 세미나, 강연회 등 필수사업을 연간 1-2회 추진하는 등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함.
    - ※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는 경제, 무역, 문화 등을 주요 의제로 구성  
한인회(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대한상공회의소(KORCHAM),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등으로 확장

■ 현지화 및 탈이념화 지원

- 부문별 사업을 강화: 여성·청년(차세대)·직업군 별 사업 기획
- 현지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프로그램 개발·추진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 재외동포 청(소)년, 차세대의 통일·역사인식 함양은 재외동포의 주요한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야함.

- 전체(해외조직 전체)와 부분(협의회, 지회)이 역할을 분담하여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함(청년컨퍼런스, 통일골든벨, 백일장, 한글학교 등).
  - 재외동포사회의 리더 육성, 통일 공공외교를 실행할 인재를 확보함.
- 여성 리더십 연수나 여성 컨퍼런스 등의 행사와 연계 방안 모색
- ‘세계한상대회’ 등과 연계를 통해 특정 직업군별 사업 강화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 공관, 현지 북한 체류 노동자, 북한 지원 단체 등과의 접촉 등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 필요
- 향후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 공동 행사 기획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IV. 관련 법규 개정 방안





## IV. 관련 법규 개정 방안



### ① 기능 발전 방안 중 ‘자문위원의 의무 강화’

- 법 제12조에서 “...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고,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사유로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에 위반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시행령에서 위원 해촉의 판단기준으로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시행령의 근거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위원 해촉을 할 수 있으며 성실한 참여가 담보될 수 있을 것임.

### ② 기능 발전 방안 중 ‘법 개정을 통한 정기회의의 법정화’

- 시행령 제30조의 제5항 정도(현재 5항은 6항으로 변경)에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가 있으)며 협의회 회장이 소집한다.”는 규정을 마련함.

### ③ 기능 발전 방안 중 ‘청년 활동위원회’ 설치

-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것이 마땅하며 사무처 내부 조직으로 둘 경우라면 사무처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적절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청년활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④ 조직 발전 방안 중 ‘자문회의 구성 혁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법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전문개정 2009.5.28.]

######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3.>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법 제10조 제1항에 “6. 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50시간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자 7. 통일에 관한 관심이 특별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서 위원 위촉을 희망하는 자 8. 외국인으로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자”를 넣어 위원 임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법 제10조에 제2항으로 “②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인사를 추천하는 자는 추천대상자 가운데 여성이 30% 이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자가 2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제6호와 제7호의 인사 가운데서 임명되는 위원의 비율도 이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⑤ 조직 발전 방안 중 ‘참여율이 낮은 위원의 해촉’

- 시행령 제4조의2에 아래와 같이 위원의 해촉에 관한 판단근거를 두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봄.
- “①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직무수행에 불성실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기 시작 후 1년 간 참석통지를 받은 회의나 강연 등에 절반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2. ...”

#### ⑥ 조직 발전 방안 중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 신원조사에 관하여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추후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법규 개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⑦ 조직 발전 방안 중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서는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sup>1</sup>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경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의 개정(제8조 제1항에 추가함)을 통하여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할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화와 발전 방안

[부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 1 기 능

<설치근거 :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연 혁

- '80. 10. 27.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헌법 제68조)
- '81. 3. 14.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81. 6. 5. :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87. 10. 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88. 2. 2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 '17. 9. 1.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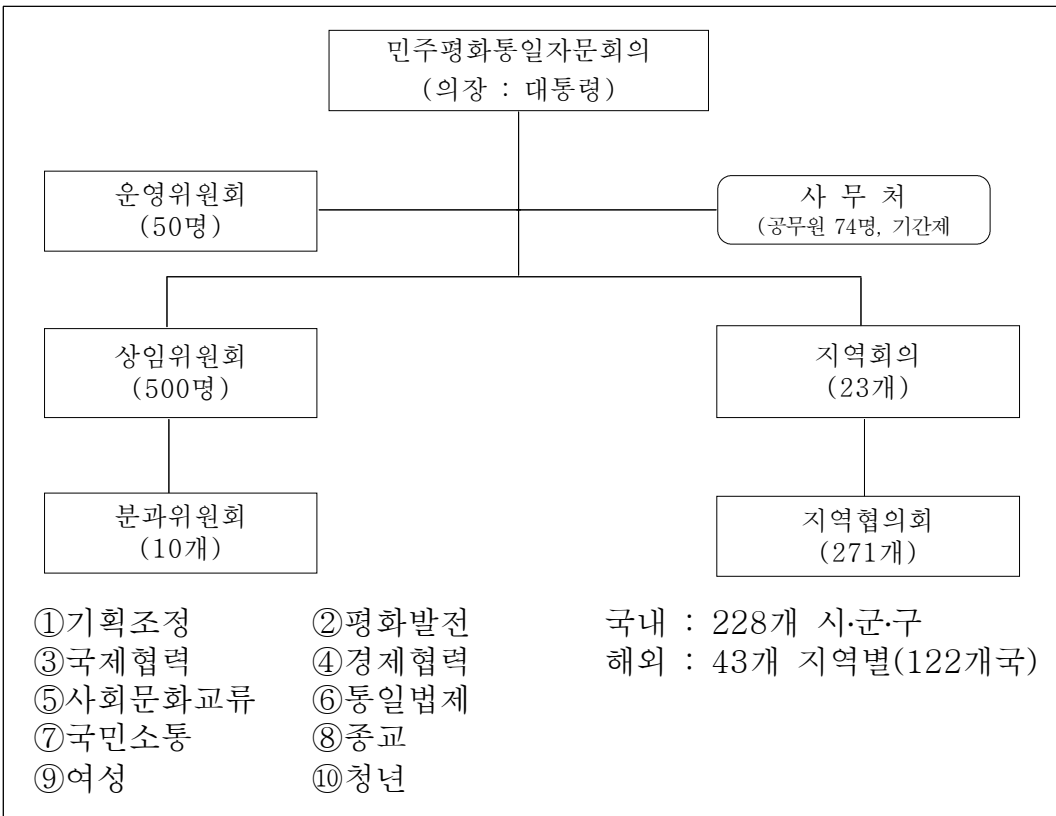
### 3 소관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13564호, 2015.12.15.,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56호, 2015.1.20.,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제27991호, 2017.4.18., 일부개정)

### 4 조직체계

#### 1 자문회의

- 조직도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현황 : 총 19,710명 >

- ◆ 국내 : 16,080명(직능대표 13,100명, 지역대표 2,980명)
  -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 해외 : 3,630명(122개국 재외동포대표)
  - \* 5개(일본, 중국, 미주, 아세안, 유럽) 지역회의, 43개 지역협의회

○ 기구별 기능(개요)

기구	구 성	기 능
전체회의 (법제20조)	전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국민적 통일이지 결집</li> <li>·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li> </ul>
운영위원회 (법제19조)	5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li> <li>· 자문위원 위촉 해제 심사</li> <li>·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li> </ul>
상임위원회 (법제18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li> <li>· 의장이 명한 사항 심의</li> <li>·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심의</li> </ul>
분과위원회 (법제18조제5항)	10개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별 안건 심의</li> <li>· 분과별 통일정책 연구 및 건의</li> </ul>
지역회의 (법제29조제1항)	국내 : 시·도, 이북5도 해외 : 일본, 미주, 중국, 아세안,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li> <li>·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형성 및 여론수렴</li> <li>·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li> <li>· 지역 통일기반 조성활동</li> </ul>
지역협의회 (법제29조제1항)	국내 : 시·군·구(228) 해외 : 지역별(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수렴</li> <li>·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li> <li>·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도출</li> <li>· 지역 통일기반 조성활동</li> </ul>

○ 분과위원회 직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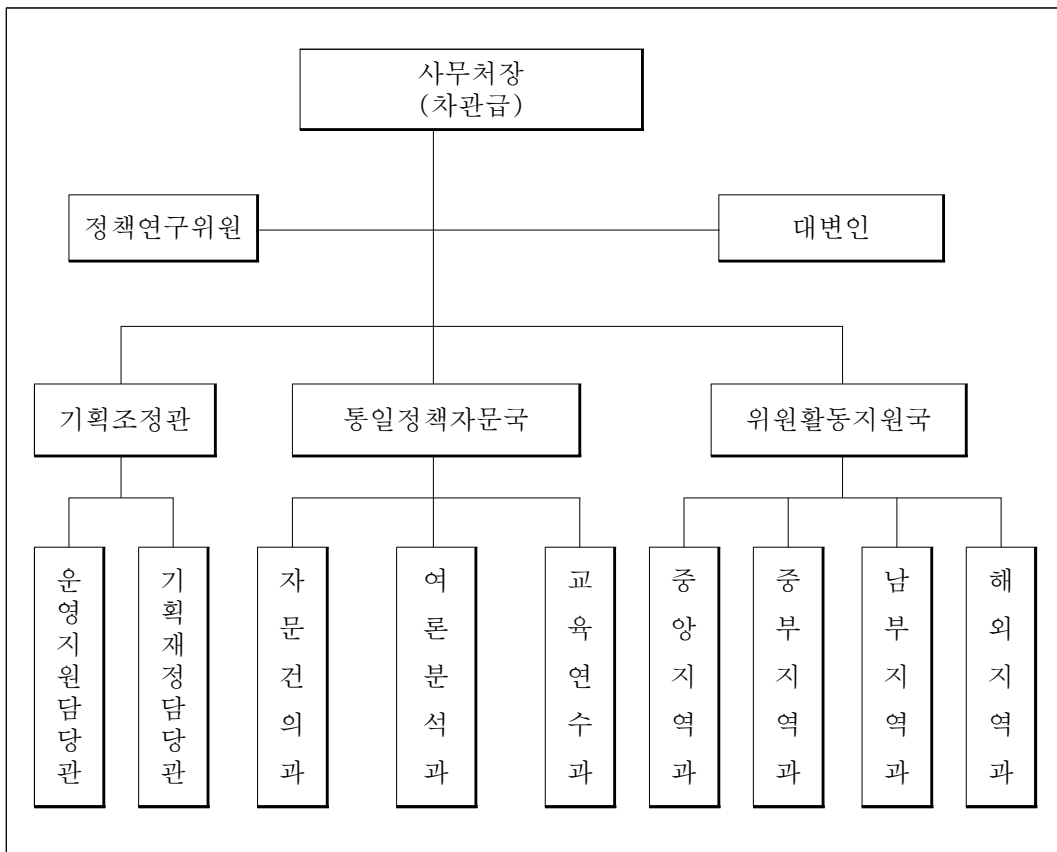
분과위원회	직무범위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의장 정책건의 보고</li> <li>· 각 분과위원회의 자문·건의안 총괄 조정</li> <l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중·장기 정책건의 방향 연구</li> <li>·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li> </ul>
평화발전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li> <li>· 남북대화 및 신뢰구축 방안</li> <li>·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안</li> <li>· 평화 담론의 형성과 국민공감대 확산 방안</li> </ul>
국제협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방안</li> <li>·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공외교 추진 방안</li> <li>·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안보분야 협력 방안</li> <li>·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li> </ul>
경제협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 방안</li> <li>·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li> <li>·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li> <li>· 남북 과학·기술·자원·에너지·환경 분야 협력 방안</li> </ul>
사회문화교류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정에서의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li> <li>· 남북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교류·협력 방안</li> <li>· 남북 문화·예술·체육인 상호 왕래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li> <li>· 남북 문화재·문화 유적지 보존과 협력 방안</li> </ul>
통일법제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국민협약 구체화 방안</li> <li>· 평화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li> <li>·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방안</li> <li>·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 가족공동체 형성 방안</li> </ul>
국민소통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 대상 통일여론수렴</li> <li>· 일반국민 및 청소년의 평화·통일인식 제고 방안</li> <li>·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li> <li>· 재외동포사회의 평화·통일 교육 및 홍보 방안</li> </ul>
종교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천 및 발전 방안</li> <li>· 남북 종교 교류 활성화 방안</li> <li>·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방안</li> <li>· 분단갈등 관리 방안</li> </ul>
여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통일운동 활성화 및 평화역량 강화 방안</li> <li>· 남북 여성 교류·협력 방안</li> <li>·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방안</li> <li>· 국내외 여성 통일 네트워크 구축 방안</li> </ul>
청년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통일운동 활성화 방안</li> <li>· 남북한 청년 교류협력 방안</li> <li>· 청년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li> <li>· 국내외 청년 통일 네트워크 구축 방안</li> </ul>

## 2 사무처

### ○ 직 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 ○ 조 직(3국·관, 9과·담당관,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 ○ 정 원 : 총 74명

○ 부서별 업무범위

부서		주요 업무
정책연구위원		·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대변인		· 정책홍보, 공보활동, 통일자료지원 · 정기간행물 발간 및 보급 · 블로그 및 SNS 운영
기획조정관		· 기획조정관 업무총괄
기획조정관	운영지원담당관	· 인사, 교육, 복무 및 결산 · 물품, 국유재산, 청사관리 및 기록물관리 ·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행정실장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국회, 기획, 예산 · 창의혁신, 성과관리 및 정보화 업무 · 감사, 민원, 법무, 조직, 청탁금지법
통일정책자문국장		· 통일정책자문국 업무총괄
통일정책자문국	자문건의과	· 통일정책 자문·건의 종합 · 출범회의 ·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여론분석과	· 통일여론수렴 종합 기획 · 통일여론조사 및 분석 · 직능별 정책회의, 국내 평화통일포럼, 전문가 토론회
	교육연수과	· 자문위원 교육 연수 종합 기획 및 추진 · 교육연수 교재발간 및 강사 발굴 지원 · 통일시대시민교실
위원활동지원국장		· 위원활동지원국 업무총괄
위원활동지원국	중앙지역과	· 서울·인천·경기·이북5도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 자문회의 구성, 국내 지역회의
	중부지역과	· 대구·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 국내 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자문위원 훈·포상
	남부지역과	·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 국내 청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지역과	·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 해외 출범회의, 해외 대북정책강연회, 해외 평화통일포럼 · 해외 청년·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 5 자문위원 개요

### 1 개요

- 대통령은 지역·계층·정파·세대를 초월하여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 법적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및 제10조

### 2 자문위원 추천기관

-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

<위촉대상별 추천권자>

구분	위촉 대상	추천권자
지역대표	· 지방의회 의원	사무처장(제청) (우선 위촉)
직능대표	· 시·도 및 시·군·구 지도급 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 추천 지도급 인사	정당대표, 국회의원
	·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	주무관청의 장
재외동포	· 기타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인사	사무처장(제청)
	· 재외동포 대표	관할 공관장

### 3 위촉절차

- ① 위촉계획안 재가 → ② 추천기관별 추천의뢰·후보자 접수 → ③ 신원조사 → ④ 후보자 선정 → ⑤ 재가 → ⑥ 자문위원 등록 및 임기시작(2년)



#### 4 자문위원 역할 및 활동

##### ○ 신분 및 임기

-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 하고 자문에 응하며,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
- 자문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연임가능(법 제11조)  
 ※ 제18기 자문위원 임기 : 2017. 9. 1. ~ 2019. 8. 31.
- 지역대표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

##### ○ 임무

- 모든 자문위원은 각 지역별로 설치된 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  
 ※ 지역협의회는 국내에 228개, 해외에 43개에 설치
- 자문위원은 대통령의 대북·통일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다양한 통일 여론을 수렴하며, 국내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통일역량을 결집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수 역대 자문회의의 구성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임기	협의회	국내	해외	자문위원	지역대표	직능대표	해외대표
1기	'81.6.5~'83.5.31	235	224	11	8,919	5,214	3,320	385
2기	'83.6.1~'85.5.31	235	224	11	10,074	5,106	4,129	839
3기	'85.6.1~'87.5.31	237	226	11	10,634	4,991	4,673	970
4기	'87.6.1~'91.6.28	274	263	11	10,593	4,846	4,763	984
5기	'91.6.29~'93.6.30	271	260	11	10,918	5,170	4,756	992
6기	'93.7.1~'95.6.30	278	264	14	11,501	5,170	5,185	1,146
7기	'95.7.1~'97.6.30	252	232	20	13,420	5,373	6,251	1,796

구분	임기	협의회	국내	해외	자문위원	지역대표	직능대표	해외대표
8기(1차)	'97.7.1~'98.6.30	252	232	20	13,305	5,325	6,059	1,921
8기(2차)	'98.7.1~'99.6.30	252	232	20	13,340	4,117	7,012	2,211
9기	'99.7.1~'01.6.30	255	232	23	14,142	4,146	7,526	2,470
10기	'01.7.1~'03.6.30	255	232	23	14,113	4,120	7,526	2,467
11기	'03.7.1~'05.6.30	255	232	23	14,940	4,121	8,522	2,297
12기	'05.7.1~'07.6.30	256	234	22	17,193	3,974	11,588	1,631
13기	'07.7.1~'09.6.30	263	232	31	16,791	3,445	11,369	1,977
14기	'09.7.1~'11.6.30	267	232	35	17,800	3,317	11,839	2,644
15기	'11.7.1~'13.6.30	271	229	42	19,950	3,170	13,643	3,137
16기	'13.7.1~'15.6.30	272	229	43	19,937	3,085	13,577	3,275
17기	'15.7.1~'17.6.30	271	228	43	19,947	3,157	13,512	3,278
18기	'17.9.1~'19.6.30	271	228	43	19,710	2,980	13,100	3,630

## 6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기능 및 현황

### 1 지역회의

○ 국내(17개 시도, 이북5도) 및 해외(일본,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지역)에 지역회의를 설치

- 의장이 임명하는 부의장이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

○ 지역회의 주요기능(시행령 제25조의2)

- ◆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여론수렴
-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 ◆ 그 밖에 지역사회에 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지역회의 주요사업(국내 및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2조〉

- ◆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 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연구활동 및 조사 사업
- ◆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수렴 사업
- ◆ 청년·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 ◆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 ◆ 남북교류협력 사업
- ◆ 기타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3조〉

- ◆ 해외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 통일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연구 및 조사
- ◆ 재외동포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수렴
- ◆ 청년·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활동
- ◆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활동
- ◆ 기타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 2 지역협의회

○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의장이 임명하는 협의회장이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

※ 국내 : 228개 협의회, 해외 : 43개 협의회

○ 지역협의회 주요기능(시행령 제30조제2항)

- ◆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수렴
- ◆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 ◆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도출
-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협의회 주요사업(국내 및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 ◆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 ◆ 해당 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 ◆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 ◆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 ◆ 남북교류협력사업
  - ◆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 기타 협의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 ◆ 통일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및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사업
  -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 ◆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사업
  - ◆ 재외동포 화합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③ 설치현황

○ 국내 : 18개 지역회의, 228개 지역협의회

지역회의 (18개)	지역협의회(228개)			
	소계	시	군	구
18	228	76	83	69
서울특별시	25	-	-	중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16	-	기장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8	-	달성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광역시	10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광역시	5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5	-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5	-	울주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특별자치시	-	-	-	-
경기도	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지역회의 (18개)	지역협의회(228개)			
	소계	시	군	구
강원도	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라남도	22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상북도	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2	제주시, 서귀포시	-	-
이북5도	-	-	-	-

○ 해외 : 5개 지역회의, 43개 지역협의회

협의회명	위원수	국 가	협의회명	위원수	국 가						
계	3,630	122개국(163공관)	일본: 430명, 중국: 348명, 아세안: 640명 미주: 1,752명, 유럽: 460명								
일본동부	165	일본	브라질	50	브라질						
일본중부	59		중미·카리브	72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자메이카						
일본근기	160				남미서부	56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페루				
일본서부	46						영 국	53	아일랜드, 영국		
베이징	99	남유럽							69	그리스,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알바니아, 몰타	
광저우	60		북유럽	141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칭다오	63				중 동	81				레바논,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상하이	64						아프리카	60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네갈,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잠비아,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선 양	62	모스크바							39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서남아	48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블라디보스톡	17					러시아		
동남아남부	97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78	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동남아북부	86	대만, 팔라우, 필리핀, (홍콩)			미 국	60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네갈,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잠비아,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동남아서부	140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 앙 아 시 아	78	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호주	131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아 프 리 카	60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네갈,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잠비아,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뉴질랜드	60	뉴질랜드	모 스 크 바	39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워싱턴	135	미 국			60	60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네갈,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잠비아,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뉴욕	186						아 프 리 카	60			60
필라델피아	55								아 프 리 카	60	
보스턴	43		아 프 리 카	60							
로스앤젤레스	186	아 프 리 카			60	60					
오렌지샌디에고	118						아 프 리 카	60			60
휴스턴	50								아 프 리 카	60	
달라스	59		아 프 리 카	60							
애틀랜타	95	아 프 리 카			60	60					
마이애미	41						아 프 리 카	60			60
하와이	56								아 프 리 카	60	
샌프란시스코	77		아 프 리 카	60							
덴 버	31	아 프 리 카			60	60					
시애틀	114						아 프 리 카	60			60
시카고	154								아 프 리 카	60	
토론토	106		아 프 리 카	60							
밴쿠버	68	아 프 리 카			60	60					
							캐나다	78			78